

2021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비대면 로봇서비스 실증 지원」 공고문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개인간 접촉이 최소화되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로봇서비스 실증 지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5월 17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공·의료 서비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로봇 기술개발 및 실증으로 비대면 로봇 서비스의 확산 및 가속화
- (수행기간) 협약일 ~ 2021년 11월 30일
 - ※ 수행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지정 수요처 내 운영(실증)해야 함
- (지원규모) 2개 컨소시엄(과제별 118,500천원 내외 지원)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0%(현금 10%, 현물 10%) 이상, 부가세

▶ 사업비(A=B+C) = 지원금(B) + 기업매칭(C, 현금 + 현물)
↳ A의 10% ↳ A의 10%

예) 사업비(148,125천원) = 지원금(118,500천원) + 기업매칭(29,625천원)
* 기업매칭(29,625천원) = 현금 14,812,500원 + 현물 14,812,500원

- 최종 지원금은 선정평가(심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 ※ 지원금 규모는 평가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로봇 제품개발 및 실증 지원
- 비대면 서비스 로봇 기술 및 제품개발
 - 공공 및 의료, 생활 서비스 분야 비대면 로봇 제품 및 기술 개발
 - 기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람과 사람 간 대면 감소(비대면)를 통한 감염병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 로봇 기술개발
 - 비대면 로봇 서비스 보급 및 적용을 통한 실증
 - 수요처 현장 적용 및 운영을 통한 실증 데이터 구축
 - 실증데이터를 통한 제품 개선 및 보완으로 로봇 서비스 확산 추진
 - 비대면 서비스 로봇 예시

구 분	제 품 기 능	수 요 처
방역 서비스	감염병 예방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비대면 자율 방역	의료, 병원, 요양원 교통 등 공공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안내 서비스	시설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안내	
의료 서비스	환자 · 검체 이송, 간호 지원 등 비대면 감염병 대응	
서빙 서비스	다중이용 시설에서 비대면 서빙 · 배송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가능한 비대면 로봇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지원항목) 해당분야 기획, 설계, 디자인, 컨설팅, 성능개선, 인증, 테스트, 제품화, 마케팅, 수요처 발굴 등 제안기업이 사업화에 필요하다고 신청한 항목에 대해 심사를 통해 지원항목 결정
- 인건비 : 총 사업비 중 현금의 20%까지 인정, 사업기간 내 신규 채용시 30%까지 인정
 - 사업과 관련없는 법인운영(공사비, 임대료, 관리비 등)은 지원 불가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로봇제품 제조 및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인천 소재 로봇 관련 중소기업과 인천소재 수요처(1곳 이상)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 분	주 요 내 용	지역제한 (인천)	비고
(총괄) 주관기관	동 과제의 협약, 사업추진, 정산, 성과관리 등을 총괄 하며, 로봇 완제품을 제조·서비스할 수 있는 중소기업	본사	필수
(참여)	로봇개발에 일부 참여하여 로봇제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등(사업비 편성 불가)	제한없음	선택
수요처	로봇적용 현장(테스트베드)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로봇 운영이 가능한 수요기업·기관	테스트 현장	필수

※ '21년 11월말까지 로봇 투입·운영 등 목표달성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에 한해서 신청 가능

○ 가점사항

-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가점 2점 부여)
- 수요처의 구매확약이 있을 경우 (가점 2점 부여)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이 20%이상일 경우 (가점 1점 부여)

○ 지원제외대상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해외 로봇제품을 활용해 단순 유통 및 서비스를 하는 내용의 경우
- 공고일 현재 공급기업 제품이 해당 수요처에 판매되어 활용되고 있는 경우
- 공고일 현재 동일한 내용의 정부(지방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부도,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 인가 기업 제외), 파산, 회생절차개시 신청기업

○ 기타사항

- 2021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내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제품개발)」, 「로봇 스타기업 육성」, 「특화로봇 사업화 지원(물류·엔터테인먼트)」 선정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과제 수행기업이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로봇산업 육성 관련 타 지원사업(사업화 지원 등)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 시 제한함

※ 단, 본 과제에서 지원받는 과제대상 및 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참여 가능함

4

추진절차

○ 추진일정

추진 단계		주요 내용	일 정
STEP 1	모집 공고	• 사업 공고	공고일 ~
⇓			
STEP 2	접수 마감	• 신청서 등 서류 접수	~ 6. 4. (18:00 限)
⇓			
STEP 3	선정 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서 심의	6월 初
⇓			
STEP 4	협약 체결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평가의견 반영) 및 협약	6월 中
⇓			
STEP 5	과제 지원금 지급	• 협약에 따른 지원금 지급	1차 : 6월 末 2차 : 9월 末
⇓			
STEP 6	중간 점검	• 기업별 과제 수행 내용 중간 점검	9월 中
⇓			
STEP 7	시연회	• 수요처 현장에서 제품 시연 시행	11월
⇓			
STEP 8	결과보고 제출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주관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11월 初
⇓			
STEP 9	사업비 정산	• 사업 수행내역 검토 및 사업비 정산	~ 12. 31

※ 추진일정에 따라 심사 및 지원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제출서류 검토, 신청자격(로봇기업 검증 및 컨소시엄 구성 적정성 등) 및 제외대상 여부, 재무상태, 가점기준 등 확인
- (발표평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운영회에서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성 및 도입(실증) 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정
 -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5인 내외
 - (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과제 순으로 2개사 선정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가점 반영
 - (지원금 심의)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한 지원금 규모 조정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수행계획의 적정성, 실증 및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목표 및 내용, 수행방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추진계획과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 목표, 추진방법, 성과지표 등 추진계획의 명확성, 타당성 	20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의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수요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컨소시엄 내 역할분담 및 사업비 구성 적정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관)의 과제 수행능력 및 추진 의지 - 컨소시엄 구성기업(기관) 역량 및 과제 추진 의지 등 - 비대면 서비스 로봇 구현 목표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양자간 공급 계약서, 협약서, MOU 등 상용화 여부 	15
기술/서비스 모델의 혁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검증을 위한 실증환경 구성의 적정성 - 수요처 환경 및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 - 실증 테스트베드, 실증 기간 및 규모, 서비스 검증 방안 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서비스 모델의 혁신성 - 서비스 모델의 신기술 활용, 적용수준 및 독창성 - 서비스 모델 고도화를 위한 향후계획 적절성 및 확산 가능성 	20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사업 활성화 등 사회·경제·기술적 파급효과 	10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2점) ○ 수요처의 구매확약이 있을 경우 (2점)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이 20%이상일 경우 (1점) 	5
합계(가점 포함)		100+5

※ 동점시 선정기준 : ①기술/서비스 모델의 혁신성 ②사업목표 및 내용 수행방법의 적정성
③기술/서비스 모델의 혁신성이 높은순으로 선정

6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 사업비 전용통장(계좌이체)으로 2회 분할 지급[1차 : 6월(70%), 2차 : 9월(30%)]
- 사업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함께 제출

○ 지원금 사용기준

- 지원금은 회계정산에 따른 증빙(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 확인증 등)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접비로 집행 가능(VAT 제외)
- 인건비는 참여인력에 한해 총사업비의 최대 30%까지 산정 가능
 - 기존인력은 총 사업비 중 20%까지 인정, 신규채용시 최대 30%까지 인정
-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시험평가비, 컨설팅비 등 산정 가능
- 장비·소재·부품 구입 등 개발에 필요한 비용 산정 가능
 - 일반적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범용성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불가
 - 1,000만원 이상 장비구입은 결과보고 시 사업 활용 내용 명시
- 외부인력 활용, 전문가활용비 등 산정 가능(계산서 발급 가능시)
- 회의비, 여비 등은 기업내부 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상식기준 고려
 - 회의비 : 1인당 3만원 이내, 참석자 서명, 사진 등 증빙
 - 여비 : 출장근거(출장신청서 등) 및 영수증 등 증빙, 택시 활용 지양
- 상기 내역 이외에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지원비 사용내역 중 과제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
- 사업종료 후 별도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를 비율별로 반납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1년 6월 4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첨부된 과제신청서 및 별첨서류를 작성하여 BizOK 사이트에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 우편 제출
 - BizOK(<http://bizok.incheon.go.kr>)→기업지원→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신청마감일 이후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오니 전산장애 등 대비 조기 등록 권장함
 - 원본 제출처 : (우)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로봇산업센터
 -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로봇산업센터 홍경식(032-727-5017, hongks@itp.or.kr)

8

제출서류

구분	NO	제 출 서 류	주관	수요	비고
필수	1	지원신청서 원본 1, 사본 9 (붙임2)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3	최근 2년간('18, '19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설립 1년 미만의 경우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비영리 제외
	5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3-별첨1)	○	○	
	6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3-별첨2)	○	○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3-별첨3)	○		
	8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3-별첨4)	○	○	비영리 제외
	9	현금·현물 출자 협약서 (붙임3-별첨5)	○		
선택	10	가점증빙서류 (구매협약서 등) * 자유양식	○		
	11	로봇제품 사진 및 구동 촬영 동영상(담당자 메일로 제출)	○		
<제출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과제계획서는 A4 크기로 작성하고, 쪽 번호 기입 요망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